
학칙 개정(안)



2026. 4

한양사이버대학교

심 의 안 건

의안번호	심의안건	발의부서
1	(2-0-01)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교육성과혁신팀
2	(2-1-01)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대학원전략팀

의안번호	1
발의부서	교육성과혁신팀
제안일자	2026년 3월

학부 학칙 일부개정 입안서

1.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제정) 이유: 조직개편 반영 및 학사운영 탄력적 적용

3. 주요골자

가. 교양교육과정 주관부서 변경(교무처→교육혁신처)

나. 탄력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세부 지침으로 운영함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3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② 본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③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과는 별도로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제33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② 본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혁신처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③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과는 별도로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제35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단, 탄력학기인 경우 취득기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p> <p>②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학</p>	<p>제35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단, 탄력학기인 경우 취득기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p> <p>②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학</p>

<p>생지도 및 학교 특성화 과목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③ 전(前)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당해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p> <p>④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최소학점 보다 적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 <p>⑤ <u>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탄력학기를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학(편입학 포함)후 첫학기에는 탄력학기를 신청할 수 없다.</u></p>	<p>생지도 및 학교 특성화 과목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③ 전(前)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당해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p> <p>④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최소학점 보다 적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 <p>⑤ <u>제1항의 탄력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제58조(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화된 경우, 매 학기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u>학점포기</u>에 의해 총 신청학점 수가 줄어든 경우는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p>	<p>제58조(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화된 경우, 매 학기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u>수강포기</u>에 의해 총 신청학점 수가 줄어든 경우는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p>

의안번호	2
발의부서	대학원전략팀
제안일자	2026년 4월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입안서

1.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제정) 이유

가. 자격시험 적용 대상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자격시험 적용 대상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
- 나. 자격시험이 석·박사학위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명확화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장 수수료 및 학위수여	제6장 수수료 및 학위수여
제38조(자격시험) 본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철 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8조(자격시험) 본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